직 제 규 정

제정 2012. 5.23 개정 2012. 8.22 시행 2012. 9. 1 개정 2014.10.28 시행 2014.12. 8 개정 2015. 2.23 시행 2015. 3. 1 개정 2015.11.20 시행 2015.12. 7 개정 2016. 6.30 시행 2016. 6.30 개정 2016.11.23 시행 2016.12. 5 개정 2017.12.27 시행 2018. 1. 1 개정 2018.11.28 시행 2018.12. 1 개정 2018.12.26 시행 2019. 1. 1 개정 2019. 5.22 시행 2019. 6. 1 개정 2019.12.26 시행 2019.12.27 개정 2020.11.25 시행 2020.12. 7 개정 2021.11.24 시행 2021.12. 1 개정 2023.11.29 시행 2023.11.30 개정 2024. 1.24 시행 2024. 2. 1 개정 2024. 8.28 시행 2024. 9. 1 개정 2025. 4.23 시행 2025. 5. 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사의 조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2장 구성워

제3조(구성원) 공사에는 임원과 직원을 둔다.

- 제4조(임원) ①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, 비상임이사 6명, 상임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24.8.28.>
 - ②사장은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중 1명을 전무이사로 보하여 전략기획본부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. <개정 2024.8.28.>
 - ③사장은 사장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광고영업본부장, 광고진흥본부장, 경영혁신본부장으로 보하여 해당 본부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 18.11.28.><개정 2024.8.28.>
 - ④ <삭제 2019.12.26.>
- 제5조(직원) ①공사에는 일반직, 전문직,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전문 직 직원을 둔다. <개정 2016.6.30.><개정 2018.12.26.>
 - ②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, 2급, 3급갑, 3급을, 4급, 5급으로 구분 한다. <개정 2023.11.29.>

제3장 기구 및 정원

- 제6조(정원) ①공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6.30.><개정 2017.12.27.><개정 2018.12.26.><개정 2021.11.24.> <개정 2023.11.29.>
 - ②조직단위별 정원은 별표 1에 의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사장이 정한다.
 - ③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

-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기구) ①공사에 사장, 이사회, 감사, 본부, 실, 국, 센터, 팀, 지사 등을 두며 기구는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5.2. 23.><개정 2015.11.20><개정 2024.8.28.><개정 2025.4.23.>
 - ②사장은 한시적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적 조직을 둘 수 있다.
 - ③사장은 특정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이나 각 기구간의 협조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사장이별도로 정한다.
 - ⑤이사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4.8.28.>
- 제8조(조직) ①사장 소속하에 전략기획본부, 광고영업본부, 광고진흥본부, 경영혁신본부를 둔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18.11.28.><개정 2024.8.28.>
 - ②감사 소속하에 감사실을 둔다.
 - ③전략기획본부에 기획조정실을 둔다. <개정 2014.10.28><개정 201 8.11.28.><개정 2019.5.22.><개정 2024.8.28.>
 - ④광고영업본부에 전략마케팅국, 영업1국, 영업2국, 지사를 둔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18.11.28.><개정 2024.8.28.>

- ⑤광고진흥본부에 광고산업진흥국, 공익사업국, 디지털혁신센터를 둔다. <개정 2014.10.28.> <개정 2018.11.28.> <개정 2024.8.28.>
- ⑥경영혁신본부에 경영관리국, 자산관리국,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18.11.28.><개정 2020.11.25.><개정 2024.8.28.>
- 제9조(하부조직)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에 따른 각 실, 국, 센터의 부 서 밑에 별표 2와 같이 팀을 두고, 다음 1호와 같이 지사를 둔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24.8.28.>
 - 1. 지사는 부산지사, 대구지사, 광주지사, 대전지사를 둔다.
 - 2. <삭제 2024.8.28.>
- 제10조(계약직) ①사장은 공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제 외에 계약직을 둘 수 있 다. <개정 2024.8.28.>
 - ②계약직은 업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일반계약직, 연구전문직, 단시간 근로계약직으로 구분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직위 및 직무

제11조(직급) ①공사 직원의 직군별 직급 또는 직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6.6.30.><개정 2018.12.26.><개정 2021.11.24.><개정 2023.11.29.><개정 2024.1.24.><개정 2024.8.28.>

- ②공사 직원의 직군별 업무 구분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6.6.3 0.><개정 2018.12.26.><개정 2023.11.29.><개정 2024.8.28.>
- 제12조(부서장) ①각 실, 국, 센터, 팀, 지사 부서에 다음과 같이 부서 장을 둔다. <개정 2024.8.28.>
 - 1. 실, 국, 센터, 팀, 지사 : 실장, 국장, 센터장, 팀장, 지사장
 - 2. <삭제 2024.8.28.>
 - ②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 소속으로 별도의 파트를 둘수 있으며 파트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4.8.28.>
 -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각 부서장의 보임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1. 실장, 국장은 일반직 2급 이상으로 보임한다.
 - 2. 센터장, 팀장, 지사장, 파트장은 일반직 3급갑 이상으로 보임한다. <신설 2021.11.24.><개정 2024.8.28.>
- 제13조(직무) ①제8조 제3항부터 제6항에 따른 각 실, 국, 센터, 지사부서의 장은 사장 또는 본부장을 보좌하여, 각 실, 국, 센터 하부조직의 팀장은 사장, 본부장 또는 직제에 따른 차상위자를 보좌하여 소속부서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4.8.28.>
 - ② <삭제 2019.12.26.>
- ③감사실장은 감사를 보좌하여, 감사팀장은 감사 또는 감사실장을 보 좌하여 소속부서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. <신설 2024.8.28.>
- 제13조의2(직무대행) ①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무이사, 상임이사

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의 순서는 제4조 제3항의 순서 에 따른다. <개정 2024.8.28.>

②사장 이외의 임직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본부, 부서 내에서 제8조, 제9조 및 별표2, 별표3의 직제순서에 따른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사장이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19.12.26.]

제13조의3(직무대리) ①사장이 출장, 휴가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무이사, 제1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24.8.28.> ②사장 이외의 임직원이 출장, 휴가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단, 사장이 직무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4.8.28.>

[본조신설 2019.12.26.]

제14조(보임) 사장은 제12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임가능 일반직 직급 정원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부서장에 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이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당해 직급의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. <개정 2024.8.28.>

제15조 <삭제 2024.8.28.>

제5장 기능

- 제16조(전략기획본부) 전략기획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5.11.20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18. 11.28.><개정 2024.8.28.>
 - 1. 전사 경영전략, 조직관리 및 기획·조정
 - 2. 재무 · 예산 관리
 - 3. 국회 업무 지원 및 홍보, 고객만족경영
 - 4. 경영평가, 내부성과평가, 윤리경영
 - 5. 경영 혁신,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
- 제17조(광고영업본부) 광고영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1 8.11.28.><개정 2024.8.28.>
 - 1. 광고정책, 영업전략 및 요금정책 수립, 영업관리 및 수금관리
 - 2. 결합판매 총괄, 광고판매 제도 개선, 판매촉진
 - 3. 마케팅 분석, 영업지원, 판촉자료 발간 및 마케팅 조사
 - 4. 비지상파 매체 영업기획 및 판매, DMB 영업기획 및 판매, 해외 광고 판매
 - 5. KBS·MBC TV, 라디오 및 기타 중소방송 영업
 - 6. 간접광고, 가상광고 판매 및 광고주 개발
 - 7. 지사 광고판매, 수금관리

- 제18조(광고진흥본부) 광고진흥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4.10.28><개정 2015.2.23.>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1 1.23.><개정 2020.11.25.><개정 2024.8.28.><개정 2025.4.23.>
 - 1. 조사, 연구 및 통계,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업무
 - 2. 광고표준화 등 광고산업 경쟁력 강화
 - 3.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 및 시청점유율 조사 검증·산정
 - 4. 광고교육 기획 및 추진
 - 5. 공익광고 기획, 관리, 집행 및 홍보
 - 6. IT 전략기획, 개발운영 및 정보보안
 - 7. 디지털미디어 및 AI 사업 개발 및 추진
- 제19조(경영혁신본부) 경영혁신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11.23.><개정 201 8.11.28.><개정 2020.11.25.><개정 2024.8.28.><개정 2025.4.23.>
 - 1. 직원복지 및 노무 · 계약 관리
 - 2. 인력관리 및 직원 교육
 - 3. 자금·회계관리 및 결산
 - 4. 자산 통합관리
 - 5. 한국광고문화회관, 한국방송회관, KOBACO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
 - 6.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 지원 및 소재제작 지원 사업
 - 7. 중소기업 광고마케팅 지원 및 광고주 개발
- 제20조(감사실) 감사실은 회계 및 업무의 감사, 외부감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21조(분장업무) 조직단위별 분장업무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제22조(명칭,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) 본사, 지사, 한국광고문화회관, 한국

방송회관. KOBACO연수원의 명칭·위치 및 업무관할구역은 별표 5와

같다. <개정 2012.8.22.>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24.8.28.>

제6장 보 칙

제23조(위임규정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8.22.>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10.28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 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직제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<2015.2.23.>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1.20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 1은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부 칙<2016.6.30.>

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11.23.>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12.27.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11.28.>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12.26.>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5.22.>

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2.26.>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1.25>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1.24>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1.24.>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별표1의 경우 시행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<2023.11.29.>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<2024.1.24.>

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<2024.8.28.>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5.4.23.>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6.30.><개정 2017.12.27.> <개 정 2018.12.26.><개정 2021.11.24.><개정 2023.11.29.><개정 2024.8.2 8.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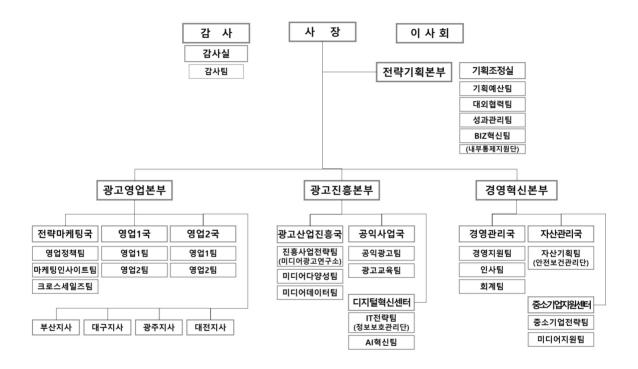
정 원 표

구 분	직위 및 직급	정 원	
임원	사 장	1	
	상 임 감 사	1	
	전 무 이 사	1	
	상임이사	3	
	계	6	
일반직	1급	(이사대우 : 4인이내)	
		12	
	2급	33	
	3급갑		
	~	219	
	5급		
	계	264	
전문직		13	
업무지원직		7	
총	계	290	

[※] 임금피크전문직 정원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.

(별표 2) <개정 2014.10.28.><개정 2015.11.20.><개정 2016.11.23.><개 정 2018.11.28.><개정 2019.5.22.><개정 2020.11.25.><개정 2021.11.2 4.><개정 2024.8.28.><개정 2025.4.23.>

기 구 표



(별표 3) <개정 2016.6.30.><개정 2018.12.26.><개정 2021.11.24.><개 정 2023.11.29.><개정 2024.1.24.><개정 2024.8.28.>

직군별 직급 직위 구분

구분	직 급	직 위
일 반 직	1 급	이 사 대 우 국 장
	2 급	국 장 대 우 부 장
	3급갑	부 장 대 우 차 장
	3급을	차 장 대 우 과 장
	4 급	대 리
	5 급	사 원
전문직		수석위원 책임위원 선임위원 위 원
업무지원직		사 원
임금피크전문직		사 원

(별표 4) <개정 2016.6.30.><개정 2018.12.26.><개정 2023.11.29.><개 정 2024.8.28.>

직군별 업무구분

구분	직 급	업무
일 반 직	1 급 - 5 급	종합 행정업무
전문직		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서, 그와 관련한 자격증 소지나, 일정기간의 수련과 경험의 인정을 요하는 업무

[※] 임금피크전문직 업무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서, 업무지원직 업무는 업무지원직 관리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.

(별표 5) <개정 2015.2.23.><개정 2015.11.20><개정 2019.5.22.><개정 2024.8.28.>

명칭, 위치 및 업무관할구역

명 칭	위 치	업 무 관 할 구 역
1. 본 사 한국방송 광고진흥 공사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제주도 일원
2. 지 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	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, 전라북도 일원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, 충청북도 일원
3. 한국광고 문화회관	서울특별시	전국일원(광고진흥업무)
4. 한국 방송회관	서울특별시	전국일원(미디어진흥업무)
5. KOBACO 연수원	경기도 양평군	전국일원(연수업무)